## 2020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

- □ 기 존: 3개 기관
  - 서울특별시장 비서실,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,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
- □ 변 경 : 시장 권한 대행 사무 포함
  - ※ 관련 근거 :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(2020.10.5, 공포시행)
    - 기 존 :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(상임위원회의 소관)
      - 1. 운영위원회
        - 가.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
        - 나.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
        - 다.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
        - 라. 시장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
        - 마. 정무부시장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

## 개 정 :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(상임위원회의 소관)

- 1. 운영위원회
  - 가.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
  - 나.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
  - 다.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③
  - 라. 시장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
  - 마. 정무부시장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
  - 바.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 권한 대행 사무에 관한 사항